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6
----------	------

제출연월일: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가. 직속기관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설치·운영기관임이 나타나지 않아 이용자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있어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교육수요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직속기관 명칭 개정(안 제3장제1절부터 제7절까지 및 제10절의 제목,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1조,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나.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9조제2항,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4]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2016.10.12. ~ 10.23.)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지역교육청)”을“(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회현동1가 100번지의 177호”를 “소파로 46 (회현동1가)”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봉천동 238번지”를 “낙성대로 101 (봉천동)”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방배3동 630번지”를 “남부순환로 2248 (방배동)”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행현리 산136번지”를 “축령로45번길 40-135”로 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사직동 1-27번지”를 “사직로9길 15-8 (사직동)”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신문로2가 2번지 64호”를 “송월길 48 (신문로2가)”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잠실동 10번지 3호”를 “올림픽로 25 (잠실동)”으로 한다.

제3장제10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교육시설관리본부”로 하고, “후암동 168번지”를 “두텁바위로 27 (후암동)”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소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을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으로 한다.

제41조 중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교육시설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속기관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종전의 직속기관(이하 “종전의 직속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분원의 명칭·위치(제12조의5 관련)

분관명	소재지
남산분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
동부분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3길 20 (면목동)
남부분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21 (구로동)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제20조 관련)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분원	가평영어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후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야외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4번길 10-656 (호평동)

[별표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분관의 명칭·위치(제28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강서분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80 (신월동)

[별표 4]

평생학습관의 명칭·위치(제30조제2항 관련)

평생학습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2길 16 (서교동)
서울특별시교육청노원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길 13 (중계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95 (고덕동)
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 10 (당산동)

[별표 5]

평생학습관 분관의 명칭·위치(제33조 관련)

분 관 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24 (아현동)

[별표 6]

도서관의 명칭·위치(제35조제2항 관련)

도서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48 (화동)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14 (사직동)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09 (후암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 (신설동)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7 (사직동)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 (후암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도봉도서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556 (쌍문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남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45 (삼성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나길 29 (등촌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4길 30 (개포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6길 57 (길동)
서울특별시교육청구로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15 (구로동)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 (연희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45길 31 (고척동)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13 (목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동작도서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4 (노량진동)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263 (오금동)

【별첨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 -----.	제4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
제1절 <u>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u>	제1절 <u>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u>
제1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교육정책의 연구·개발과 각종 교육연구 지원 및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 정보·자료 개발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u> (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u>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00번지의 177호에 둔다.</u>	제10조(설치) ①----- ----- ----- <u>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u> ----- -----.  ②----- <u>소파로 46 (회현동1가)</u> -----.
제2절 <u>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u>	제2절 <u>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u>
제12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u> (이하 "과학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u>과학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38번지에 둔다.</u>	제12조의2(설치) ①----- ----- ----- ----- <u>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u> ----- -----.  ②----- <u>낙성대로 101 (봉천동)</u> -----.
제3절 <u>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u>	제3절 <u>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u>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제반연수를 위하여 <u>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u> (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u>교육연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630번지에 둔다.</u>	제13조(설치) ①----- ----- ----- ----- ----- <u>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u> ----- -----.  ②----- <u>남부순환로 2248 (방배동)</u> -----.
제4절 <u>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u>	제4절 <u>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u>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생활을	제17조(설치) ①----- -----

<p>통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u>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u>(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u>행현리 산136번지</u>에 둔다.</p>	<p>----- ----- -----<u>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u>----- ----- ② -----<u>축령로45번길 40-135</u>-----.</p>
<p>제5절 <u>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u></p>	<p>제5절 <u>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u></p>
<p>제20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u>(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u>사직동 1-27번지</u>에 둔다.</p>	<p>제20조의2(설치) ①----- ----- ----- -----<u>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u>----- ----- ②-----<u>사직로9길 15-8 (사직동)</u>-----.</p>
<p>제6절 <u>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u></p>	<p>제6절 <u>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u></p>
<p>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u>(이하 "학교보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학교보건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u>신문로2가 2번지 64호</u>에 둔다.</p>	<p>제21조(설치) ①----- ----- -----<u>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u>----- ----- ②-----<u>송월길 48 (신문로2가)</u>-----.</p>
<p>제7절 <u>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u></p>	<p>제7절 <u>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u></p>
<p>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u>(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학생체육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u>잠실동 10번지 3호</u>에 둔다.</p>	<p>제25조(설치) ① ----- ----- -----<u>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u>----- ----- ②-----<u>올림픽로 25 (잠실동)</u>-----.</p>
<p>제10절 <u>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u></p>	<p>제10절 <u>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u></p>
<p>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u>(이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라 한다)를 둔다.</p> <p>② <u>교육시설관리사업소</u>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u>후암동 168번지</u>에 둔다.</p>	<p>제39조(설치) ①----- ----- -----<u>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u>(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 ----- ② <u>교육시설관리본부</u>----- <u>두텁바위로 27 (후암동)</u>-----.</p>

<p>제40조(소장) <u>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제40조(본부장) <u>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u>----- -----.</p>
<p>제41조(업무) <u>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41조(업무) <u>교육시설관리본부</u>----- -----.</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직속기관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종전의 직속기관(이하 “종전의 직속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로 한다.</p> <p>제1조 및 제2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p> <p>제3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p>



## 현 행

## 개 정 안

[별표 1]

과학전시관 분관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의5 관련)

분관명	소재지	비고
남산분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177	
동부분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동 380	
남부분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43	

[별표 2]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제20조 관련)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비고
분원	가평영어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87-1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585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055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4	
야외 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1-1	

[별표 1]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분관의 명칭·위치(제12조의5 관련)

분관명	소재지
남산분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
동부분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3길 20 (면목동)
남부분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21 (구로동)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위치(제20조 관련)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명	소재지
분원	가평영어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육장3길 26 (신후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야외 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14번길 10-656 (호평동)

## 현 행

## 개 정 안

[별표 3]

학생체육관 분관의 명칭·위치(제28조 관련)

분원명	소재지	비고
학생체육관 강서분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6-7	

[별표 3]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분관의 명칭·위치(제28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강서분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80 (신월동)

[별표 4]

평생학습관의 명칭·위치(제30조제2항 관련)

평생학습관명	소재지	비고
마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1-1	
노원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8	
고덕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96	
영등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22	

[별표 4]

평생학습관의 명칭·위치(제30조제2항 관련)

평생학습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2길 16 (서교동)
서울특별시교육청노원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길 13 (중계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95 (고덕동)
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 10 (당산동)

[별표 5]

평생학습관 분관의 명칭·위치(제33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비고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02-1	

[별표 5]

평생학습관 분관의 명칭·위치(제33조 관련)

분관명	소재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24 (아현동)

## 현 행

## 개 정 안

[별표 6]

도서관의 명칭·위치(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6]

도서관의 명칭·위치(제35조제2항 관련)

도 서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2	
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1-28	
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84	
동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9-4	
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	
용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90	
도봉도서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22-163	
강남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8	
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산25-31	
개포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9	
강동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2	
구로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6-1	
서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116	
고척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9-14	
양천도서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5	
동작도서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310-150	
송파도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1	

도 서 관 명	소 재 지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48 (화동)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14 (사직동)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09 (후암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 (신설동)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7 (사직동)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 (후암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도봉도서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556 (쌍문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남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45 (삼성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나길 29 (등촌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4길 30 (개포동)
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6길 57 (길동)
서울특별시교육청구로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15 (구로동)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대로 412 (연희동)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45길 31 (고척동)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13 (목동)
서울특별시교육청동작도서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4 (노량진동)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263 (오금동)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기관 명칭변경으로 인한 현판 등 교체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직속기관의 명칭을 개정하고 기존 토지지번의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 명칭변경으로 인한 현판 등의 교체 비용이 발생하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김영란(02-399-9356)

【별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평생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장제8절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li> <li>○ 제3장제9절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으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li> <li>- 별표에서 개별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명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변경할 실효성이 없음</li> </ul>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장제3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연수원”으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li> <li>- 약칭사용 시 교육과 관련된 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해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약칭과 연속성 고려</li> </ul>
청운초등학교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장제1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연구정보원”으로 한다.</li> <li>○ 제3장제3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연수원”으로 한다.</li> <li>○ 제3장제10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서울특별시교육청시설관리본부”로 한다.</li> </ul>	
신창중학교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서울교육청”으로 줄여서 사용</li> <li>○ 지원청명도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등으로 줄여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li> <li>-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함이 타당</li> </ul>

【별첨 4】

## 관계법규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